2027. 3. 17(수) ~ 19(금)
일산 킨텍스
www.seconexpo.com

SECON 2027

참가신청서

전시자(계약자) 정보

명함 부착으로 대체 가능 | * 필수 항목

회사명(국문) *		회사명(영문) *	
대표자명		웹사이트	
주소(도로명 주소 기재) *	(우:)		
담당자명 *		직함 *	
이메일 *		부서	
휴대폰 *		전화 *	

• 참가기업 디지털 쇼룸, 상호간판 등 전시 홍보물에는 작성하신 참가기업명이 사용되므로,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분야

* 중복 체크 가능

☐ 영상보안	☐ AI보안	☐ 스마트도시 보안	☐ 산업보안/OT보안	☐ 출입통제	☐ 홈랜드 시큐리티
☐ 사회안전	☐ 사이버보안	☐ 장애진단 · 모니터링	☐ 네트워크	☐ 백업 · 복구	☐ 기타 _____

세금계산서 담당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담당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직함	
휴대폰		전화	

SECTION A (부스)

* 부스 공간은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타인과 공유하거나 재임대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시회 참가 규정 제6조 7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스 번호	

항목	신청 면적		단가(원)		합계
독립 부스 (면적만 제공, 18m² 이상)	m²	부스	420,000/m²	3,780,000/1부스	원
조립 부스 (면적+기본장치, 9m² 이상)	m²	부스	480,000/m²	4,320,000/1부스	원
업그레이드 부스 (면적+기본장치, 18m² 이상)	m²	부스	670,000/m²	12,060,000/2부스	원
비고			부스 비용(A)		원
			30% (즉시 납입)		원
			70% (2026. 11. 12 까지)		원

※ 2026. 11. 12 이후 신청 시 부스 비용 및 디지털 멤버십 비용의 100% 즉시 납입

SECTION B (디지털 멤버십)

디지털 멤버십(필수)	300,000원 / 참가기업	디지털 멤버십 비용(B) 100% (즉시 납입)	300,000원

비고	소계(A+B)	원
	VAT(10%)	원
	총 참가비	**원**

SECON & eGISEC 운영사무국
(04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41 (마포동), 마포타워 15층
Tel: 02-719-6933(ARS.4) Email: secon@seconexpo.com

thebn informa markets

2027. 3. 17(수) ~ 19(금)
일산 킨텍스
www.seconexpo.com

SECON 2027

참가신청서

참가비 납입 방법

인포마마켓비엔㈜은 아래 내용에 따라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참가신청서 접수일자	인보이스 발행	납입 규정
2026년 11월 12일 까지	참가신청서 접수 시	부스 비용의 30%와 디지털 멤버십 비용의 100%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납입, 2026년 11월 12일까지 잔금(부스 비용의 70%) 납입
2026년 11월 12일 이후		부스 비용 및 디지털 멤버십 비용의 100% 즉시 납입

은행 정보 예금주: 인포마마켓비엔㈜ 은행명: KEB 하나은행 망우점 계좌번호: 209-890050-72904 은행 주소: (우. 02164)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430 Tel: 02-494-1111

참가비 적용규정

-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기한 안에 완납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기업의 부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 후, 부스 면적을 축소할 경우에는 기존 참가신청서 접수 시점이 아닌 변경 시점의 해당 할인율이 적용되며, 축소한 면적에 대해서는 아래의 취소 규정에 적용된 일정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 참가 신청 후, 부스 면적을 추가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 신청 면적은 변경 시점의 해당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전시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하며, 취소 날짜에 따른 위약금을 하기와 같이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시자는 참가기업 디지털 쇼룸 내 기업 정보도 삭제됨에 동의 합니다.
- 전시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기 납입된 총 참가비와 광고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며, 아래의 일정에 따라 취소 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취소 및 축소 날짜	위약금
2026년 11월 12일 까지	부스 비용 30%와 디지털 멤버십 비용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2026년 11월 12일 이후	부스 비용 및 디지털 멤버십 비용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주최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SECON & eGISEC 주최자는 관련 행사 및 제품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는 언제든지 구독 취소 또는 주최자에게 연락하여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https://www.seconexpo.com/privacy_kor.as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한 문의는 databi-hk@informa.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명판 및 서명

- 당사는 전시회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제5조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에 따라 당사의 개인정보가 수집 · 이용될 수 있으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 당사는 본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는 모두 사실이며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 본 참가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및 전시회 참가규정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해당 조건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된 참가신청서는 secon@seconexpo.com으로 이메일 제출해야 합니다.

전시자(계약자)		주최자	
동 참가신청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참가신청서 원본은 인포마마켓비엔㈜으로 보내주시고, 복사본을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SECON & eGISEC 2027 운영 사무국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담당자	
담당자		서명	
직함			
서명	(명판 및 서명)		
날짜		날짜	

SECON & eGISEC 운영사무국
(04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41 (마포동), 마포타워 15층
Tel: 02-719-6933(ARS.4) Email: secon@seconexpo.com

thebn informa markets

전시회 참가규정

1. 용어정의
이 계약 조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용어의 정의가 적용된다.
1.1. "참가신청서"라 함은 동 전시회 참가규정이 첨부 되거나 참조되어 통합되거나 연계되는, 참가양식의 문서/ 혹은 주최자가 주최자의 권한으로 동의할 수 있는 패키지 세부사항을 명시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1.2. "회계년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1.3. "전시자"라 함은 참가신청서 상에 게재된 자로, 패키지를 구매하는 개인, 기관, 협회/단체 및 회사 등을 말한다.
1.4. "참가규정"이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규정을 말한다.
1.5. "계약"이라 함은 전시자와 주최자 간에 맺어진 계약을 말하며 "참가규정"과 "참가신청서"를 말한다.
1.6. "정보 보호법" 이라 함은 주최자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격, 전시회의 진행 또는 행되는 장소, 패키지의 요소가 제공되는 곳, 및/또는 주최자 혹은 전시자의 지역에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말한다.
1.7. "디바이스"라 함은 방문객 정보를 스캔하는 응용프로그램 및 바코드 스캐너 기기 등을 의미한다.
1.8. "디렉토리"라 함은 온라인 제품 및/또는 서비스 디렉토리 또는 기타 게재형식 등을 의미하며, 전시자, 스폰서 및 참석자를 위한 디렉토리로써, 매치메이킹 기능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9. "디렉토리 내용"이라 함은 디렉토리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디렉토리에 직접 업로드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제공한 모든 콘텐츠, 자료 및 기타 정보를 말한다.
1.10. "전시회"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주최자가 소정의 전시회를 통해 주최하는 전시회, 콘퍼런스, 부대행사 또는 기타 행사를 말한다.
1.11. "참가비"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패키지에 대해 전시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1.12. "불가항력 사건"이라 함은 주최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사건 또는 상황 (정부 규정 또는 조치, 제재 부과, 수출/입 금지, 군사 행동, 테러 또는 전쟁 행위, 폭동, 전염병, 대유행병, 화재, 자연적 불가항력, 홍수, 가뭄, 지진, 자연 재해, 정전 및 악의적인 해킹공격, 제삼자 계약자/공급 업체의 과실, 전시장 손상 또는 취소, 산업 분쟁, 전력 등 공공 서비스 중단 및 공급 실패 또는 핵, 화학 또는 생물학적 오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말한다.
1.13. "Informa Group"이라 함은 최종 모회사가 Informa PLC인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1.14.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상표, 상표명, 도메인 이름, 로고, 디자인 권리,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도덕적 권리, 영업권, 신뢰권, 노하우 및 영업 비밀,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또는 미래를 포함해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유효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15. "전시자 매뉴얼" 이라 함은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전시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공하는 매뉴얼을 말하며, 해당 내용은 주최자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1.16. "마케팅 서비스"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스폰서십의 마케팅 서비스 요소를 말하며, 홈 보 캠페인으로써 제삼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홍보성 캠페인을 말한다.
1.17. "자료"라 함은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제공하는 모든 내용, 자료 및 기타 정보를 말하며, 전시자 회사명, 프로필 정보,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로고, 원고, 텍스트, 사진, 오디오, 비디오, 디자인 작업물, 콘텐츠 세션 데이터 및 디렉토리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18. "개막일"이라 함은 전시회의 개막 첫 날로 예정되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의 첫 날을 의미한다.
1.19. "주최자"라 함은 패키지를 제공하는 자로,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Informa Group 법인을 말한다.
1.20. "전시장 소유자"라 함은 전시장을 소유하고, 관리 및/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1. "패키지"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전시회와 관련해 전시자가 구매한 전시 공간 및/또는 스폰서십 및/또는, 디렉토리 및/또는 디바이스 패키지를 의미하며, 해당 내용은 양자의 합의하에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1.22. "직원"이라 함은 전시회와 관련하여 전시자와 관련된 혹은 전시자에 의해 고용된 직원, 컨설턴트, 대리인, 기타 담당자 또는 하청기업(또는 이들 해당 계약자의 직원, 컨설턴트, 대리인 혹은 기타 담당자)를 말한다.
1.23.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이라 함은 개인정보에 대한 우발적, 무단 또는 불법 처리, 파기, 손실, 손상, 변경 또는 접근으로 유발되는 모든 보안 위반을 말한다.
1.24. "전시 공간"이라 함은 참가신청서를 통해 전시자에게 제공된 전시 공간을 말한다.
1.25. "스폰서십"이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패키지에 대한 스폰서 및/또는 판촉 요소를 말하며, 광고, 마케팅 서비스 및/또는 콘텐츠 세션을 후원, 기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26. "전시장"이라 함은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2. 패키지
2.1. 주최자에게 서명/날인된 참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참가신청서는 참가규정에 따라 패키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로 여겨지며, 전시자는 이를 무효화할 수 없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전시자가 반드시 (i)전시회에 전시하는 것이나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 (ii)전시장 내 특정 홀, 부문 또는 위치에 배정되는 것 및/또는 (iii)실제 전시 공간 및/또는 스폰서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실제 패키지를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 것, 또는 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참가신청서는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이메일 등 서면(이메일 혹은 다른 방법으로)로 승인을 하였을 때,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신청서는 계약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다. 동 참가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패키지 업데이트를 포함해 동 참가신청서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참가규정은 전시자가 작용하고자 하는 무역, 관습, 관행 또는 거래 과정에서 암시되는 용어를 배제하고 적용된다.

3. 참가비
3.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지불 조건에 따라 참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 이외의 은행 계좌로 전시자가 참가비(또는 그 일부)를 지불할 경우 주최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주최자는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이 은행 계좌 통신 사기, 신원 도용 및 기타 사기 등 제삼자 사기와 관련해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고, 이의 모든 손실, 손해, 비용,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참가비를 지불하였다면 동 계약에 따른 전시자의 지불 의무가 충족된다. 만일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지정 은행 계좌 변경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직접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지불 기한까지 주최자가 참가비를 주최자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받지 못 할 경우,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전시회에 대한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의 접근 거부, (ii)패키지 제공 거부 및/또는 제공 철회, 및/또는 (iii)체무를 확정하는 판결서 유무와 상관없이, 납부 미감 기일로부터 사율 HSBC Limited의 기본 대출 금리보다 연 4% 높은 연체율을 적용하여 참가비가 지불될 때까지 분기별로 복리로 적용하여 부과. 주최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시자는 패키지에 관련하여 이미 지불한 참가비를 환불받을 권리가 없으며, 참가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3.2. 참가비는 계약된 총액이 주최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며, (i)은행 및 기타 결제 및 이체 수수료와 (ii)참가비 외에 VAT, GST, 판매 및/또는 서비스 세금을 포함한 각종 관련 세금 등, 전시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전시자가 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참가비의 전액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전시자는 해당 세무 당국에 직접 원천세를 납부하고 주최자에게 지불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유효한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거나, 주최자가 원천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참가비 금액/체한없이 그리고 동 상황으로 인해 증분된 금액을 포함하여은 보상하는데 필요한 만큼 증액된다.
3.3. 전시자는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주최자가 전시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한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동 특정한 서비스는 전기와 같은 공공시설에 연결과 소비, 전시회 부스 도면에 대한 감사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주최자가 선정한 장치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 장치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비용은 전시자 매뉴얼에 안내되거나 주최자가 서면으로 개막일 이전에 제공할 수 있다. 동 계약은 전시자와 장치사간의 계약이므로, 전시자는 각 해당하는 장치사의 결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을 각 해당 장치사에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다. 전시자가 장치사의 결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주최자는 재량에 따라 (i) 주최자가 직접 장치사에 전시자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납부 후 전시자에게 직접 비용을 재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ii)전시자가 복구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동 참가신청서의 제15조제항에 따라 주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전시회의 일반 의무사항
4.1. 전시자는 (i)모든 법률(노동 수수 방지, 부패 방지, 무역 제재, 현대판 노예 방지법 및 수출 통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ii)주최자 및/또는 전시장 소유자가 패키지와 관련해 수시로 공표하는 모든 규칙(규정 및 지침으로 건강, 안전 및 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iii)매뉴얼에 명시된 조항(모든 운영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음)을 따라야 한다.
4.2. 전시자는 다음의 내용을 보증하고, 대변하고, 수행한다. 전시자는 (i)동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권리, 자격 및 권한을 가지며 (ii)전시자를 대신하여 동 계약에 서명하거나 법적으로 수락하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4.3. 전시자와 전시자의 직원은 (i)주최자,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전시회 참석자에게 불쾌, 짜증, 성가신 행위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ii)주최자,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전시회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또는 (iii)전시장이나 전시자 소유가 아닌 어떠한 고정물이나 부속품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4. 전시자는 패키지 및/또는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주최자와 선의로 협력해야 한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패키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주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정확함을 보장해야 한다.
4.5. 전시자는 여권, 사증 및 기타 입국 및 입장을 위해 필요한 필수 문서를 취득할 단독 책임이 있다. 만약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이러한 문서를 취득하는 것을 실패하여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 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며 관액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4.6. 전시자는 전시회에 출품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및/또는 자료 등에 대한 라이선스, 규제 승인, 통관 또는 전시회 참가를 위한 기타 모든 필수 승인을 얻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사용하는 음악 또는 기타 음향 및 영상 자료를 재생하는데 필요한 필수 동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승인을 얻는 것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4.7. 전시자는 전시자의 세부 정보(전시자의 회사명, 로고, 프로필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주최자가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승인한다. (i)전시회 소가이드, 공식 디렉토리 및/또는 전시회와 관련해 준비된 홍보 자료 및/또는 (ii)전시회 사이트, 전시회 및/또는 웹사이트에 게재. 주최자는 그러한 홍보/게재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누락 또는 잘못된 인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8.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의 모든 허가되지 않은 전시회의 영상 촬영, 소리 녹음, 사진 촬영과 모든 허가되지 않은 전시장에서의 음향 혹은 시각 자료의 송신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i)동 제4조제8항을 위반하여 매체에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주최자에게 넘기거나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한다. 그리고 (ii)해당 자료의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조건 없이 해당 자료가 제작된 그 즉시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4.9. 전시자는 주최자 및 주최자의 담당자에게 영상촬영, 소리녹음, 사진촬영을 제한 없이 항상 허용하며, 이는 전시자의 직원(및 콘텐츠)이 포함된 영상, 녹음, 사진(결과물)도 예외가 되지 아니한다. 전시자는 전시자의 직원이 이러한 전시회의 영상 촬영, 소리 녹음 그리고 사진 촬영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해당 결과물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소유권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로써 모든 다음 사항을 포기한다: (i)해당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 그리고 (ii)해당 결과물 혹은 이의 사용과 관련되거나 혹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전시자의 권리, 주최자는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녹음 파일을 이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위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만약 전시자의 직원이 전시회의 영상 촬영, 소리 녹음 및/또는 사진 촬영에 그들의 모습이 사용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4.10. 전시자는 동 계약의 규정(참가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전시자 매뉴얼의 조항은 주최자의 기밀 정보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절대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주최자의 개인정보 보호
5.1. 주최자와 전시자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는 제05조제9항에서 정의된 데이터 리스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처리 방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각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규정 및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EU 규칙 2016/679) 준수를 위하여 각자가 개인정보 컨트롤러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각 당사자는 (i)반드시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타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ii)상대 당사자가 정보 보호법을 이행하도록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각 당사자가 동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는 (i)지체 없이 상대 당사자에게 해당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에 대해 합당한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ii)해당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과 관련해 해당 정보 대상자 및/또는 관련 당국과 연락 및 통지 시, 상대 당사자와 협조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주최자 또는 전시자가 동 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을 경우, 당사자는 (i)상대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합당한 세부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ii)당국에 대한 회신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리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주최자는 주최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보호하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conexpo.com/eng/service/sud02.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5.2. 제05조제항의 보편성을 전제로, 전시자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사항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 어떠한 문서(데이터 리스트를 받는 경우 (i)데이터 리스트는 기밀 문서로 간주하고 제삼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ii)데이터 리스트는 데이터 리스트 상 연락처들이 패키지를 통해 전시자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여한 것에 전시자가 응답하기 위해 초기에 접근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iii)주최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시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지정한 기한 중에 더 이른 시기 안에, 데이터 리스트의 모든 복은 일부 정보를 안전하게 삭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며, (iv)전시자의 데이터 리스트 사용과 관련하여 감독 당국으로부터 일체의 문의, 불만, 통지 혹은 연락을 받을 경우, 주최자에게 합당하게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응은 주최자와 합리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리스트의 전부 또는 데이터 리스트의 어느 일부만 전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주최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함에 따른 결과로 전시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전시자가 예상한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전시 공간에 대한 특별 조항
6.1. 주최자는 전시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전시회의 도면이나 전시 공간의 수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크기, 모양, 또는 전시 공간의 위치 및/또는 전시회 부스 및/또는 입구와 전시장까지의 접근 통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공간의 크기가 축소된 경우, 전시자는 전시 공간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참가비에 비례하여 환불을 받게 된다.
6.2. 주최자는 전시자가 전시회에서 전시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시 공간 사용은 소유권이 전시자에게 있지 않으며, 전시 공간에 재임차인을 두지 않으며 사용할 수 없다. 전시자는 전시 공간에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시장 내 전시 공간 외의 공간에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출판물이나 기타 자료를 배포하거나 유세하듯 전시장 내를 이동하며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6.3. 전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전시회 개최 시 전시 공간을 점유해야 하고, (ii)전시회 기간 동안 항상 전시 공간 및 그 안에 있는 부스에 (a)적격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b)깨끗하고,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물품/품목 및 기타 위험 요소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주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전시자의 안전은 전시자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전시자는 (iii)전시회 종료 이전에 전시 공간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6.4. 전시자는 전시자의 상업적인 활동에 전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어떠한 자료 및/또는 전시품 전시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공식 운송 승인 또는 동 전시회와 관련된 통관 서류 없이는 어떠한 전시품도 전시장에 반입될 수 없다. 전시자는 모든 전시품 및 관련 물품의 전시장 내 주최으로부터 서면 승인 후에 전시자로부터 서면 승인 후에 전시품 시연은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승인한 자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 또는 시연이 (i)법률 및/또는 해당 산업 규정/표준을 위반(CITES 무역 규정 또는 IUCN에서 발행한 기타 표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하고, (ii)모조품 구성 및/또는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iii)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또는 (iv)동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의 법률적인 책임 없이 전시자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시품을 제거하거나 시연을 중단할 수 있다.
6.5. 제05조제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전시자는 모듈형 또는 유사한 구조의 파이프, 드레이프, 조립식 부스, 브랜딩 및 부스 서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시 공간 조성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주최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전시품 및 디스플레이 자료들은 전시부스의 벽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립부스 외 모든 전시 공간의 도면은 승인을 위해 전시자 매뉴얼 상에 제출한 사양과 동일해야 한다. 주최자는 승인된 사양과 다르거나 필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전시부스에 대해 변경 또는 제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변경 또는 제거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전시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변경 또는 제거가 주최자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 부담하는 동일한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6.6. 주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사전 제작된 부스를 전시 공간(모듈형 부스 또는 유사한 구축물, 파이프 및 드레이프, 조립형 부스 포함)에 설치할 책임이 있다. 전시 공간의 세부설정 및 브랜딩 등은 전적으로 전시자의 책임이며, 전시자가 조성한다.
6.7.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전시 공간을 재상치와 공유할 수 없다(그리고 이러한 승인은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가 주최자가 규정한 일체의 규정, 조건 및 제한을 준수할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전시자가 전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전시자는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와 공동 사용자의 직원이 동 계약에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전시자가 전시 공간 전체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 및 공동 사용자의 직원의 일체의 행동 혹은 태만도 계약의 규정 위반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한한다. 전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전체 참가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시자에게 있다.
6.8. 음식 및/또는 음료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만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자는 앞서 언급한 음식 및/또는 음료 반입 서면 동의와는 별도로 알코올 음료 반입에 대한 주최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알코올 음료를 전시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만약 알코올 음료 반입이 주최자에 의해 허용된 경우도 콜키지 등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6.9. 소비지에게 공개된 전시회 및/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 판매 및 관련 제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은 전시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6.10. 주최자가 명시한 전시회 종료 후 또는 동 참가신청서의 조기 해지 시 또는 전시품은 전시장에서 제거되며 전시 공간은 양호하고 깨끗한 상태로 주최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후 남아있는 모든 전시자의 자산은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며 전시자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주최자가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다.
6.11.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관계없이,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동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및/또는 전시회 및/또는 기타 전시회 참석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경우 주최자는 어떠한 법률적 책임없이 전시자의 전시부스를 폐쇄할 권리가 있다.

7. 스폰서십 관련 특별 조항
7.1. 전시자는 주최자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기한 내 제공해야 하며 주최자가 제시한 자료의 사양과 기술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쇄, 혹은 출판을 거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그러나 스폰서십과 관련된 모든 권한 비용과 참가비는 주최자에게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
7.2. 전시자는 자료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을 보증하고, 대변하고, 수행한다. 자료가 (i)정확하고 완전하며 (ii)전시자가 자료의 원작자이자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 소유자나 규제 당국 등 연관된 제삼자로부터 허가, 동의, 승인,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전시자는 리드 캡쳐 서비스의 활성화 및 사용에 대해 전시자와 디바이스 공급업체 간 별도의 계약이 생성된다. 디바이스 공급업체가 사용약관에 따라 전시자의 리드 캡쳐 서비스 사용을 중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지불한 모든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9.3. 전시자는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해당 참석자의 배지를 스캔하기 이전에 전시회 참석자로부터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9.4. 전시자는 리드 캡쳐 서비스와 관련해,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디바이스 공급업체가 사용약관에 따라 호스팅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특히, 전시자는 디바이스 공급업체의 사용약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전시자가 리드 캡쳐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한 특정 데이터를 주최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9.5.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동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더 이상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디바이스 공급업체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주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9.6. 전시자는 디바이스 공급업체가 주최자를 대신하여 모든 디바이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전시자는 디바이스 공급업체의 지침에 따라 모든 디바이스를 수집하고 반환해야 한다.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디바이스를 반환하지 않거나, 손상을 입혀 손실, 손상,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 및/또는 Informa Group의 구성원에게 배상해야 한다. 또한 디바이스의 오류, 오작동 또는 부정확성 및/또는 수집된 참석자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손실 또는 손상의 경우, 전시자는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주최자가 위임한 공식 또는 권장 장치사가 전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시자와 장치사가 직접 체결하는 별도 계약 사항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16.3. 제16항제05호에 따라 (i)전시자는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의 전시회 참가 및/또는 참석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ii)주최자나 Informa Group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간접적, 결과적, 특수적, 부수적 징벌적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또는 예상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비즈니스 실패, 기회 상실, 영업권 상실, 데이터 손실 또는 기타 유형의 경제적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b)개인, 재산의 도난, 손실, 부상, 질병이 발생하여 전시자 또는 전시자의 직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a) 또는 (b)가 부주의, 고의적 행동, 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지만 여부는 관계없음. (iii)전시회 및/또는 패키지와 관련하여 동 계약에 따른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에 대한 주최자와 Informa Group의 구성원의 총 책임은 전시자가 지불한 총 참가비의 금액 범위에 한한다.
16.4. 전시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피해, 비용, 청구 또는 비용에 대해 주최자 및/또는 Informa Group의 구성원에게 배상해야 한다. (i)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의 행위 또는 과실/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 상 손실 또는 손상, 혹은 상해, 질병,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ii)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디렉토리에 게재한 자료 및/또는 전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삼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 및/또는 패키지와 관련해서 수령 및/또는 사용한 자료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삼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 (iii)전시자 및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어떠한 법률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iv)패키지의 일부로 데이터 리스트를 수신하였으나,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제05조제2항에 따라 주최자가 동 데이터 리스트의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제05조제2항에 따라 주최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시자는 지불한 참가비의 일부(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환불되며 전시자는 참가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동 참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최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시자는 지불한 참가비의 일부는 주최자가 취소 손실, 공적 책임 보험 및 책임 보험을 인정된 보험사를 통해 전시자 매뉴얼에 기재된 최소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자가 제05조제항에 따라 전시 공간을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전시자는 전시자의 제삼자 및 직원 책임 보험을 전시자 매뉴얼에 기재된 최소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보험 정책과 보험료 지불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7.2. 전시자는 전시품 반입 및 반출을 포함해, 전시회 기간에 대해 관련된 장치사가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장치사가 개인 상해, 사망 및 재산 피해 및/또는 재산 손실, 공적 책임 보험 및 책임 보험을 인정된 보험사를 통해 전시자 매뉴얼에 기재된 최소 금액 이상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7.3. 전시자가 제06조제항에 따라 전시 공간을 공유하도록 허용되는 한, 제17조제항 및 제7조제항의 전시 공간 공유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7.4. 보험 보장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전시 참가 권리 (전시 공간 공유자의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18. 지속 가능성
18.1. 주최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운영을 수행하여, 전시회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시자는 전시자 매뉴얼 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거나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9. 일반조항
19.1. 주최자는 언제든지 전시회에 입장하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전시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2. 수시로 주최자, 전시장 소유자 및 해당 직원은 작업, 수리 또는 변경을 수행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입은 손실, 손상, 비용, 청구, 비용 또는 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3. 전시자는 주최자와 Informa Group의 각 구성원이 모든 매체 및 하기 기술된 자료에 대해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저작권료 없는, 비 독점적인 세계적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며, 모든 매체 및 하기 기술된 자료를 수집, 유지 관리, 재생산, 게시 표시 전송, 배포, 적응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i)전시회 및/또는 패키지에서 촬영 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입은 손실, 손상, 비용, 청구, 비용 또는 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주최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및 기타 정보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입은 손실, 손상, 비용, 청구, 비용 또는 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4. 동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 합작 투자 또는 대행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19.5. 동 규정과 참가신청서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서의 조항이 우선한다.
19.6. 각 계약 당사자는 동 계약이 전시회 및 패키지와 관련해 당사자 간 모든 합의를 구성함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계약 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서면 합의, 의사소통 또는 합의서 등이 동 계약으로 대체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19.7.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동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부과할 수 없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동의 없이 Informa Group의 구성원 누구에게든 동 계약에 따른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동의 없이 동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주최자 또는 Informa Group의 전시회와 패키지 관련해 수행하거나 이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19.8.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권리나 구제책을 행사하는데 실패할 경우, 이는 해당 권리나